

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종 환 의원입니다.
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그럼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전략 및 정책기조를 고려하고, 문화콘텐츠 및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」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.

- 또한, 1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이며,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는 지역산업 진흥이나 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입법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 - 이에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명시적인 지원 및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신설하고(안 제5조),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명시하는(안 제6조),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.

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